

자유정기예금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이하 “은행”)과의 자유 정기예금 거래 (이하 “예금”)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 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만기일 혹은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부분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원화 3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고객으로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 최고 60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 혹은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0%
 -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
 -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 ③ 예금의 증도해지 및 원금의 부분인출과 관련된 이자 계산은 아래 제7조의 내용에 의한다.

제7조 예금의 중도해지 및 원금의 부분 인출

- ①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② 이 예금의 원금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예금개설일 1개월 이후부터 1백만원 단위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분인출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한 후의 잔여 원금이 1백만원보다 적을 경우 은행은 예금 전체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④ 부분 인출된 원금은 제 7조 제 ①항에 의거한중도 해지 이율의 적용을 받으며 예금의 약정이율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되는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⑤ 만약 기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부분 인출된 원금에 대한 기 지급이자도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 ⑥ 예금에 질권 설정 등 지급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부분 인출이 되지 않는다. 만약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원할 경우 질권 등 제한사항을 해소한 후 부분 인출을 하도록 한다.
- ⑦ 예치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예금원금에 대하여는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